

**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
공제세액계산서**

(앞쪽)

[illegible]

②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③ 공제세액 계산내용

	공제대상금액(㉑)	공제율(㉒)	공제금액(㉑ × ㉒)
공제금액	⑥ 해당 과세연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	5/1,000	원
	⑦ 해당 과세연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원양 해상물동량 운송비용	1/100	원
	⑧ 공제금액의 합계		원
⑨ 산 출 세 액		원	
⑩ 한 도 액(⑨×10/100)		원	
⑪ 공 제 세 액(⑧과 ⑩ 중 적은 금액)		원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27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이
유
로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1.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여부란④은 「해운법」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여부를 적습니다.
2. 공제금액란⑥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 「해운법」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입니다.
3. 공제금액란의 운송비용란(⑥, ⑦)은 「해운법」 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기재합니다. 단, 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출·수입에 따른 물품의 이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여야 하며,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및 기타 서류에 기재된 구간의 운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해당됩니다.
4. ⑨ 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·농어촌특별세·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[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1)]의 ㉓ 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고,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호서식)의 "㉔ 산출세액"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